

# 고성군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제1194호)

## 심 사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6.                   고 성 군 수

### 2. 제안사유

- 상수도공기업의 전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시스템 도입 등 획기적인 시설 현대화를 통한 우수율 향상이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상 집중투자 능력이 없어 현상유지를 이루는 정도로서는 경영개선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이므로
-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있고, 집중적인 투자능력이 있는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서, 우수율 향상 및 시설 현대화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상수도공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 경남 서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와 연계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군비부담이 경감되었으며, 4개 시·군 통합관리 위탁시 시너지 효과가 높음.
- 우리군과 인근 3개 시의 통합관리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시행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추진경위

- '08. 6. 3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수공 ⇒ 고성군)
- '08. 10. 27 ~ '08. 12. 21   타당성 여부 용역실시(고성군)
- '08. 12. 30       경남서부권 전문기관 통합관리 MOU 체결(4개 지자체 ⇔ 수공)
- '09. 2. 4         4개 지자체 합동 실무자 회의 개최(3회, 행안부 참석)
- '09. 4. 14       경남서부권통합관리 사업계획서 제출(수공 ⇔ 4개 지자체)
- '09. 9. 30       통합관리 추진 점검회의 개최(행안부)
- '09. 10. 21      위탁심의회 개최
- '09. 11. 5       상수도업무 위탁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4.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나. 위탁기간 : 20년(2010년 ~ 2029년)

다. 위탁사업비 : 60,227백만원

- 시설개선비 : 32,616백만원(시설물 개선, 노후관 교체 등)
- 운영관리비 : 27,611백만원(인건비, 운영경비, 투자보수 등)
- ※ 위탁운영 단가 : 636/m<sup>3</sup>

라. 업무구분

- 한국수자원공사
  - 위탁업무 :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 대상시설
    - 가압시설 : 2개소
    - 관 로 : 362km(송수 : 22km, 배수 : 168km, 급수 : 172km)
    - 배 수 지 : 10개소 V=9,760m<sup>3</sup>
- 고성군
  - 시설의 신규 및 확장사업, 기존시설의 재산소유
  - 요금책정, 자치법규 개정, 의회업무
  - 수도정책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관리감독

#### 5. 근거법률

- 「수도법」 제23조, 「수도법시행령」 제35조~제40조
-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은 경남도 20개 시군 중 고성, 사천, 거제, 통영시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에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위탁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량, 노후관로 144km 교체 등으로 '08년말 현재 유수율 41.6%를 2014년까지 유수율 80% 이상으로 높이며 민원 편의제고 등 상수도공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 지방상수도 위탁 시 고성군의 시설소유권, 요금결정에 대한 수도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위탁사업과 무관하며, 통합관리에 따른 절감효과 155억원(국고지원기준), 정수구입비 등 절감 437억원, 수질개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 고성군의 상수도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 고성군에 미칠 장·단기적 실익이 무엇인지,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고용전환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상수도 민영화와 요금 인상, 주민들의 권리 축소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7.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상수도 수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로서 대표성을 띤 사람으로 차출된 것인지, 수탁위원회 결과치로 보아 괜찮다는 의견이지요?
- 답 : 그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 문 : 민감한 사안으로 2014년까지 우수율 80%까지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던지, 또한, 현재 종사하는 직원들의 정년보장이 안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계약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 답 : 협약체결 때 환경부의 위탁에 따른 지침이 있어 지침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수율 80% 달성을 못할 경우 재정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 : 사실, 적자 사업인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합하는 것은 우수율을 높여 이를 만회 하려는 것이며, 정부에서 통합을 유도하지요?
- 답 :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통합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통영에서 문제된 것이 민영화와 요금인상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군의 국고 지원은 통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 문 :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줄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답 : 사천은 30년으로 했고, 20년을 하는데 염려하는 부분이 이행 안되면 바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 문 : 수시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답 : 예, 할 수 있고, 재정패널티를 계속 주기 때문에 목표대로 안하면 우리가 줘야할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 문 : 주민들의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부분은?
- 답 : 요금은 고성군이 다 결정하므로 염려 안해도 됩니다.
- 문 : 고성군 지방상수도 업무 위탁 시 현재, 고성군의 긴급보수원, 무기 계약근로자 신분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수자원 공사와 계약시 신청자가 원하면 청원경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는 계약서 문구상 반드시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만약 신청을 해서 하게 된다면, 신분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 2009. 12.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